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68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7.

발 의 자:인재근・양정숙・강민정

소병훈 · 최혜영 · 남인순

앙이원영·노웅래·고영인

최종윤 • 이장섭 • 이규민

서영석 · 허 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,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, 무위, 고독이라는 인생 4고(苦)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. 또한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사 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,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 회·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의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.

본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·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

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 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・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・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라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·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, 상담, 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마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·판매,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필

요한 재정지원,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 0조 및 제11조).

- 바.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,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사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, 노인의 숙련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 및 제15조).
- 아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 및 제18조).
- 자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,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19조 및 제20조).
- 차.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.
- 카.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 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(안

제24조).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노인일자리"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,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.
 - 2. "노인사회활동"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 다.
 - 3. "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"이란 노인에게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, 건강 및 복지 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노인

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·보급하고,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.

- 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(이하"기 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
 - 2.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
 - 3.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 - 4.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- 5.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관련 교육 · 훈련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각각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에

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「노인복지법」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
- 제7조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8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・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(이하 "노인일자리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
 - 2.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, 정보 제공
 - 3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
 - 4. 제11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
 - 5.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

요한 사항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일자리전담기 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,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취업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·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, 상담,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, 상담 및 교육,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공동체사업단 설립·운영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 인일자리전담기관,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

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·판매,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
- 2.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
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기준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제11조의 공동체사업단 등(이하"기업등"이라 한다)을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등은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인건비, 장려금

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·기관이 노인의 취업에 적합하 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친화기업·기관의 지정기준, 절차 및 표시방법, 지정업무의 위탁, 지정된 기업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의 취소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1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제14조(노인공익활동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 층 지원 등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(이하 이조에서 "노인공익활동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가하는 노인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
- 2.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
- 3.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노인경륜활용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 된 기술,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"노인경륜활용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경륜활용 사업에 참가하는 노인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.

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조성

- 제16조(공공기관의 노인 우선고용 의무)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인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친화기업·기관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(이하 "노인생산품"이라 한다)의 판매·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, 박람회,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8조(노인생산품 우선구매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- 제19조(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(홍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1조(연구조사)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, 실시된 사업에 대한

분석,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 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22조(참여자 보호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·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 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·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4조(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이하 "개발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

한다.

-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⑥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
- 2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ㆍ훈련
- 3.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· 연수
- 4.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
- 5.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
- 6.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
- 7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- 8.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⑨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① 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4장 보칙

- 제25조(자료의 요청)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 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26조(보고와 검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전 담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른 출입·검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2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, 노인일 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
 - 2.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- 3.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
 - 4. 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・검사를 거부・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

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(이하 "구법인"이라 한다)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노인인력개발원(이하 "신법인"이라 한다)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 -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 -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 -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

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제3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삭제한다.

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인일 자리전담기관

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 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"을 "노인의료복지시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제23조의2제4항, 제33조제4항"을 "제33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